

사회과학연구소 규정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 (명칭)** 본 연구소는 성결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(이하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- 제2조 (목적)** 본 연구소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의 제반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를 통하여 대학의 학문적 발전과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 (소재지)** 본 연구소는 성결대학교 안에 둔다.
- 제4조 (사업)** ①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 연구지 발간 및 세미나 개최
 2. 사회 발전에 관한 이론 및 프로그램 연구
 3.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연구 결과 및 정보의 교환
 4. 공공 및 민간 기관과의 협동적 관계를 통한 공동 연구
 5. 외부로부터 위탁된 연구의 수행
 6.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
- ② 제1항 제5호의 사업은 수행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2 장 조직과 운영

- 제5조 (조직)** 연구소에는 소장, 총무 간사,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본 연구소의 기본 방침과 사업 및 예산·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둔다.
- 제6조 (임원)**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.
- 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- ③ 연구소의 총무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소장의 유고 시에는 그 임무를 담당한다.
 - ④ 총무 간사는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제7조 (연구위원 및 연구원)** ① 연구소에는 연구위원 및 전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,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연구위원은 본 대학의 전임 교원으로 하며,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사회과학연구소 규정(4-3-1)

③ 연구소장은 필요에 따라 전임조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고 그 자격은 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 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는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연구 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.

③ 운영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연구소 관리 위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위촉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 (보고) 소장은 연구소 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다음 각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연구소 사업 보고서 및 결산서를 다음해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2. 연구소의 신년도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1월말까지 제출한다.
3. 연구위원의 연구비 수혜 사항 및 연구 업적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.
4. 연구 과제의 진행 상황을 해당 년도 계획서에 의거하여 연구 결과 실적물 단위로 보고한다.

제10조 (부서) 연구소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.

제11조 (논문발간집) ① 연구소에는 연 1회이상 논문집을 발간한다.

② 논문의 게재는 소장의 심의를 거친 연구소의 논문에 한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에도 발표 기회를 줄 수 있다.

제 3 장 재 정

제12조 (연구보조비) 학교의 연구보조비는 전임 교원이 논문을 제출하여 발표되었을 때에 년1회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 (재정) ①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학교의 연구보조비
2. 국고 보조금
3. 외부 용역 연구비
4. 기타 지원 연구비 및 보조비

② 제1항 제3호의 경우는 연구비 총액의 5%이상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사회과학연구소 규정(4-3-1)

③ 매 회계년도의 예산 및 결산은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 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2조, 제13조, 제14조)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7조)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